

【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문 1】 담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②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종전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자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 2】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 ③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④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문 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 ③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유류분권리자가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④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4】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②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 ③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그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른 동업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 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수인이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②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소 제기시부터는 악의점유 및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③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⑤ 취득시효는 그 기간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문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②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④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문 7】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고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내지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나는 반면,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난다.
- ③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되며, 각 사원에게는 지분권이나 총유물 분할청구권이 없다.
-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결국 총유물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문 8】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62조), 재산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유증(민법 제1064조) 등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고,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유추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③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도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혼인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나, 성년의 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 ④ 만 19세가 넘는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은 사술에 해당하나,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문 9】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혼 배우자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나 유증만을 산입한다.
- ⑤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10】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문11】 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임에도 대리인이 대물변제와 같이 기본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 ③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에게 있다.
- 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문12】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그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 ⑤ 채권자의 차용증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문13】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그 청구는 모두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 ②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된다.
-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문14】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에 이자 및 비용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 ⑤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문15】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경작한 자는 그가 선의인 경우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④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16】 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라면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1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대한 합의해제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도,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일부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문18】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②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면 그 건물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문19】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
- ②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③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고 혼인의 지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며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 ④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가 서로 상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다.

【문2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는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문2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 ②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 ⑤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22】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②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약정만을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을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문23】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문24】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 ②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문25】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대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만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
- ④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문26】 도급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도급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지체상금을 연대보증인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⑤ 건물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완성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된다.

【문2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 ②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
- ③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④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한다.
- 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문28】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해 판례는 제2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때에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본다.

【문29】 부합물 또는 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그것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어도 중물이 될 수 없다.
- ② 원칙적으로 중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중물이 아니다.
- ④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 ⑤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증축된 부분은 그것이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경매목적물로 감정평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30】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다.
-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문31】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전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 ② 조합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채권액 전액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조합은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⑤ 조합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32】 채권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통지도 유효하다.
- ②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양도계약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와 양수인이 체결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문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소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주소는 한 곳이어야 한다.
-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다.
- ④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나,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34】 대습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만, 피대습자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
- ②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 ③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갖는다.
- ④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 ⑤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상속을 부정한다.

【문35】 친양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여야 하는데 여가서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 ③ 친양자는 양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 ④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입양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 ⑤ 친양자 입양에도 보통양자의 입양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문3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채권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소멸되지 않는다.
- ③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문37】 중증 재산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증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중증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중증재산의 분배에 관한 중증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 ③ 중증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중증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중증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체받을 수 있다.
- ④ 위 경우, 곧바로 중증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
- ⑤ 중증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서 무효이다.

【문38】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채권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②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 ③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 ④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행의 필요가 없다면 상계가 허용된다.
- 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문3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분의 취소도 가능하다.
-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된 채무는 원상회복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③ 무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취득한 이익이 금전상의 이익인 때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성질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존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40】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 ②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따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후 그 사망신고 수리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문42】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구)·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있으며, 가정법원지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은 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다.
- ② 감독법원의 장은 관내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이상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독법원은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규정한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의 임면보고, 행정구역 변경 등의 보고 등 각종 보고를 받는다.
- ⑤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43】 가족관계등록신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고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 ③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강제인지신고, 재판상과양신고, 재판상이혼신고 등은 소 제기자가 신고하여야 하지만, 소제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 ⑤ 보고적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 아닌 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착오가 없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44】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 ①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②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③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성·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법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 ⑤ 성·본 변경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성·본변경허가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여야 한다.

【문45】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출생자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출생자의 형(兄)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
- ② 명미정(名未定)의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③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다.
- ④ 원칙적으로 이름의 자수(字數)에 대한 제한은 없다.
- ⑤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姓)과 본(本)에도 적용된다.